

몽골의 자유지역 현황과 시사점

1. 자유지역(Free Zone)의 개요

□ 설립배경

- 자유지역¹⁾은 내외국인에 대한 활발한 교역기회 제공,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됨.
- 정부는 1개의 자유경제지역과 2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함.
 - 남부 중국 국경 인근의 자민우드(Zamiin-Uud) 자유경제지역은 국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지역 건설을 통해 제조, 서비스 및 관광업을 발전시켜 몽골의 사회와 경제 발전을 추구
 - ※ 최초 설립 시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, 더욱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허용하고자 자유경제지역으로 변경
 - 북부 러시아 국경 인근의 알탄불락(Altanbulag) 자유무역지역은 국제무역, 외국인투자 유치와 환경, 인구, 자원 및 인프라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향상이 목적
 - 서부 러시아 국경 인근의 차가누르(Tsagaa Nuur) 자유무역지역은 국제무역, 여행 및 관광산업을 통해 서부지역의 실업 및 빈곤해소를 목표

1) 자유지역은 자유경제지역(Free Economic Zone)과 자유무역지역(Free Trade Zone)을 함께 지칭하는 말임.

- 러시아와 중국 국경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우리나라, 일본, 동남아로 가는 진출기지로도 활용 가능함.
- 최근에는 자유지역 내 수출지향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, 외국의 수출가공업체들의 입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.

- 이를 위해 세금 감면 및 저렴한 토지 제공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

※ 법인 등록절차의 간소화, 각종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, 입주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와 외국 근로자에 대한 입국절차 및 번역(문서)작업 등을 지원

<그림 1> 몽골 자유무역·경제지역의 위치



자료 : 필자 작성

□ 지역별 현황 및 개발계획

(1) 자민우드 자유경제지역

- 도르노고비(Dornogobi) 아이막²⁾ 내 900ha 규모 지역으로 제조, 서비스 및 관광업을 위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음.
 - 중국 국경 인근지역인 에린(Ereen)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, 경제적으로 발달된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들을 이어주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.
- 다른 두 지역과 비교하여 주변지역에 양호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등 더 나은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음.
 - 중국은 동 지역 내 이미 공장을 설립하여 완제품을 제조 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,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할 계획
- 한편 '자유경제지역법(자민우드)'은 2003년 6월 의회 최종 승인되었고,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법률 정비를 완료하였음.
- 총 건설비용은 약 1억 달러이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국가예산 및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원조로 자금을 조달 중임.
 - 2009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(ADB) 지원으로 자민우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
- 한편 인근지역의 타반톨고이(Tavan Tolgoi) 석탄 광산, 오유틀고이(Oyu Tolgoi) 동·금 광산 등 전략광산³⁾ 개발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, 수송인프라 및 도시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임.
 - 정부는 광산개발과 인근지역에 철도인프라와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자원수송과 산업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

2) 행정 구역을 21개의 아이막(aimag)과 그 하위분류 단위인 315개의 쉼(sum)으로 구분하는데 아이막과 쉼은 각각 우리나라의 도(道)와 시(市)에 해당됨.

3) 전략광산은 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국가·지역경제·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, 연간 생산(가능) 규모가 GDP의 5% 이상인 광산을 지칭함.

보유한 동 자유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

※ 전략광산 관련 철도사업을 위해 러시아, 중국, 일본, 한국 등이 의회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이미 제출

○ 또한 정부는 3가지 주요 산업(제조업, 서비스업, 관광업)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동 산업과 관련한 다수 업체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됨.

<표 1> 자민우드 자유무역지역의 개발계획 분야

산업 구분	개발계획 분야
제조업	가전·전자제품 조립 및 직물, 가구, 수출용 기념품 제조 공장 등
서비스업	창고, 홍보 전시관, 상품 거래소, 제품의 포장, 은행 및 금융, 서비스업, 정보통신 센터 등
관광업	호텔 등 관광객 숙소, 레스토랑, 카페, 패스트푸드점, 카지노, 골프장, 경마장, 낙타 폴로 경기장 등

주) 현재 관광업 유치 계획분야로 카지노 개발은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 중임.

자료: Trade Facilitation and Logistics Development Strategy Report, 2009

(2) 알탄불락 자유무역지역

○ 셀렌지(Selenge) 아이막 내 500ha 규모로 국경 인근의 러시아 카야트(Khyakht) 역과 몽골 수크바타르(Sukhbaatar) 역으로부터 각각 5km,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.

- 지리적 이점으로 향후 관광, 제조, 무역 및 물류 거점지로서의 성장가능성이 큼.

○ 동 지역 설립을 통해 호텔, 레스토랑 및 자동차 정비소 사업을 장려하고 특히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.

- 향후 식품, 섬유, 전자제품 등의 반제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

- 산업별로 전문화된 기관과의 연계 및 관련 법률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

※ '자유무역지역법(알탄불락)'은 2002년 6월 의회 최종 승인

- 총 건설비용은 약 9,000만 달러이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국가예산과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주요 인프라시설을 건설 중임.
- 2011년까지 동 지역과 수크바타르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를 완공할 계획
- 또한 인근지역의 토모테이(Tomortei) 철 광산, 보로(Boroo) 금 광산 및 에데네트(Erdenet) 동·몰리브덴 광산 개발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, 자원수송, 무역 등에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동 자유지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계획임.
- 정부는 자원개발 관련 지역에 제련·가공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, 자유지역에서 무역과 산업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
- 2008년 이래로 현재까지 6억 달러 이상의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
- 몽골, 러시아, 일본, 미국, 중국, 한국의 60여 개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기업들에게 이미 400ha의 토지를 임대

(3) 차가누르 자유무역지역

- 바얀울기(Bayan-Ulgii) 아이막 내 708ha 규모로 대부분 자갈로 덮인 평지로서 낮은 인구밀도, 높은 실업률 및 극심한 기상여건 등 투자환경이 열악함.
-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국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서부지역 무역, 관광 및 물류 거점지로의 역할이 기대됨.
- 총 건설비용은 약 3,000만 달러로 2011년 완공이 목표이나, 다른 두 지역으로의 투자 집중화와 글로벌 위기로 인한 투자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- 한편 제조·가공분야 기업과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인프라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음.
- ‘자유무역지역법(차가누르)’은 2003년 6월 의회 최종 승인

- 향후 밀레니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서부지역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※ 밀레니엄 도로(Millennium Road)는 울란바타르를 기점으로 동부와 서부를 횡단하는 도로로 2011년 완공을 목표

-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무역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입주할 계획

2. 외국인투자 인센티브(공통)

□ 투자 인센티브

○ 아래의 해당 품목에 대해 면세혜택 제공

- 외국에서 자유지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, 품목세(소비세), 부가가치세를 면제
- 자유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, 품목세, 부가가치세를 면제
- 외국으로부터 몽골 내 관세지역으로 수입된 후 자유지역으로 들어온 품목은 이미 수입세,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

※ 자유지역에서 몽골 내 관세지역으로 되돌아가는 품목에 상기 세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음.

○ 아래 해당 기업의 경우 소득세, 재산세 등에 경감과 면세혜택 제공

- 전기, 난방, 수도공급, 하수처리시설, 정보통신,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인프라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경감
- 저장시설, 화물터미널, 호텔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초운영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, 다음 3년간 소득세를 50% 경감

- 창고, 보안, 포장 관련 기업이 정부와 10년 이상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최초 운영일로부터 1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 소득세를 50% 경감
- 정부기관에 등록되거나 자유지역 내에서 영구히 존속하는 회사, 단체 및 개인은 최초 운영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부동산세를 면제

※ 소유권을 몽골시민, 회사, 기관에게 매각할 경우 소득세를 면제

○ 또한 아래의 해당 기업에 임대료 경감과 면세혜택 제공

- 무역, 공공서비스 관련 기업에 대해 최초운영일로부터 3년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 임대료를 50% 경감
- 인프라시설 건설 관련 기업에게도 5년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 임대료를 30% 경감

3. 사업허가증 취득절차(공통)

□ 사업자(기업) 필수조건

- 자유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는 무역, 생산, 서비스 관련 기업
- 국내외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기술과 서비스를 이용
- 친환경 경영을 수행

□ 제출서류 목록

- 법인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
 - 신청서와 법인증명서 각 1부

※ 신청서 내용은 법인명, 본사 사업장, 국적, 투자내용, 투자기간 및 법인의 사업활동 지역 등을 포함

- 법인이름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증 받은 정관 각 1부

- 개인일 경우 자기소개서 및 공증을 받은 신분증 각 1부

※ 위 구비서류를 자유지역 내 관청에 제출 후 법적 조건을 만족할 경우 5일 이내 법인등록증 취득 가능

○ 투자계약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

- 법인등록비 영수증(Registration fee receipt)

- 사업계획서 1부

※ 투자 및 인사 계획안, 프로젝트 경제타당성 평가서, 재무계획 관련 내용 등을 기재

- 법인 소개서 1부

※ 신설법인일 경우 법인명 사용허가서 1부 포함

○ 허가증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

- 투자계약서 1부

4. 시사점

□ 몽골정부, 인프라와 도시개발 부문에 투자확대

○ 현재 수도인 울란바타르와 주요 도시(다르한, 에데네트 등)를 제외한 지역은 인프라시설과 도시개발이 크게 낙후되어 있음.

- 정부는 국가의 지속적인 미래 발전전략으로 자원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 및 제조·가공 산업발전을 위한 국내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.
- 자원개발 지역 외에도 자원수송, 산업교류 등에 지리적 이점이 있는 자유 지역에 대한 인프라와 도시개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□ 대 몽골 투자에 대한 다변화 모색

- 우리나라의 대 몽골 투자는 대부분 자동차, 무선기기, 식품 등 제조와 식품업에 집중. 그러나 전세계의 대 몽골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에너지 산업임.
- 몽골정부는 에너지(광물자원)부문에 대한 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함.
 - 중국, 캐나다, 러시아, 미국,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향후 자원확보를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시설과 도시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
-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석탄, 원유 등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동 부문에 대한 투자가 상호 경제협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-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기존 제조와 식품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, 나아가 자원외교와 연계한 도로, 철도 등의 인프라시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 러시아, 중국 등 대 몽골 투자규모가 큰 국가와 함께 주요 자원개발 지역과 인근의 자유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와 협상을 검토할 필요

조사역 박종국 (☎ 02-3779-6673)

E-mail: parkjk@koreaexim.go.kr